



## 아동수당제도 도입 현황과 시사점

홍민지 연구원

연구

아동수당제도는 아동과 양육기구를 지원하는 가족지원 정책으로 현재 OECD 가입국 대부분이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 중임. 우리나라는 아동·가족에 대한 지출이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며, 특히 현금 지출이 매우 부족하였음.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제도는 2018년 8월에 도입되었으며 올해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함.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은 아동 양육의 부담을 일정 부분 경감시켜 장기적으로 출산율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아동수당제도<sup>1)</sup>는 아동과 양육기구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기본적인 사회복지제도로서, 현재 OECD 가입국 대부분이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가족지원 정책으로 운영 중임<sup>2)</sup>

- 프랑스는 1932년부터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세 이하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정에 소득,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함
  - 프랑스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아동수당 등 현금지원을 포함하여 양육시간에 대한 지원, 보육 및 교육서비스 등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이 꾸준히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됨<sup>3)</sup>
- 영국은 1945년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는 1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 정액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함<sup>4)</sup>
- 일본은 1972년부터 중학교 졸업 이전의 아동을 양육하는 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표 1〉 참조)
  - 연령별로 월정액을 지급(3세 미만 15,000엔, 3세 이상 10,000엔)하며,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인 양육자에게는 월 5,000엔을 지급함

1) 가족 수당(Family Allowance)을 포함함

2) OECD 35개 가입국 중 4개국(우리나라, 미국, 터키, 멕시코)을 제외한 31개 국가에서 아동수당제도를 운영함(16년 말 기준)

3) 고제이·고경표(2017. 12),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3

4) 학생의 경우 20세까지 연장됨; <https://www.gov.uk/child-benefit>(검색일: 2019년 10월 10일)

〈표 1〉 우리나라와 일본의 아동수당제도 비교

구분	우리나라	일본
도입 시기	2018년	1972년
근거 법	아동수당법	아동수당법(子ども手当法)
수급권자	만 7세 미만의 아동	중학교 졸업 이전(15번째 생일 후 첫 3월 31일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
지급액	10만 원/월	3세 미만: 15,000엔/월 3세 이상 초등학교 수료 전: 10,000엔/월 (셋째 자녀부터 15,000엔/월) 중학생: 10,000엔/월
지급시기	매월 25일	2, 6, 10월(4개월분 지급)
기타	-	양육자의 소득이 소득제한 한도액 이상인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5,000엔/월을 지급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홈페이지 (<http://ihappy.or.kr/>),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https://www8.cao.go.jp/shoushi/jidouteate/annai.html>)

■ 우리나라는 아동·가족에 대한 지출이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며, 특히 현금 지출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2013년 기준)

- 일본의 GDP 대비 아동·가족에 대한 지출 비중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이나, 아동수당 지급으로 인한 현금 지출 비중이 높음(〈그림 1〉 참조)
-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지원 정책은 아동빈곤율 및 출산율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OECD 1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아동수당을 포함한 공적 현금급여 지출이 높을수록 아동빈곤율이 낮고 출산율이 높음<sup>5)</sup>

〈그림 1〉 주요국 GDP 대비 아동·가족에 대한 지출 비중



주: 전체는 2015년, 현금 급여는 2013년 기준임  
자료: OECD Stat.

5) 최영·김슬기(2017. 12), 「아동수당 도입과 정책적 효과에 관한 연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pp. 12~13

■ 우리나라의 아동수당<sup>6)</sup>은 2018년 8월에 도입되었으며, '19년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함<sup>7)</sup>(표 1) 참조

- 초기에는 6세 미만의 아동을 소득기준으로 선별하여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아동수당제도를 운영 중임
  - 아동수당제도 도입 당시에는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 가구의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였으나, '19년 4월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sup>8)</sup>되었고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지급함<sup>9)</sup>
  -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되며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sup>10)</sup>
  - 아동 수당 지급 대상 276만 명 중 268.5만 명이 지급받아 지급률이 97.2%인 것으로 나타남('19년 9월 25일 기준)

■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은 아동 양육의 부담을 일정 부분 경감시켜 장기적으로 출산율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kiqi

6)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보호자는 목적에 맞게 아동수당을 사용하여야 함; 아동수당법 제 1조 내지 제 3조  
 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9. 24),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합니다!”, p. 3  
 8) 1~3월분 소급 지급, 2019년 1월부터 보편적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음  
 9) 아동수당 수혜자 수는 '18. 9월 195만 명, '19. 4월 231만 명, '19년 9월 268만 명임  
 10)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가능함